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362
----------	-------

발의연월일 : 2026. 6. 19.

발 의 자 : 김위상 · 고동진 · 강대식  
조지연 · 우재준 · 권영진  
김형동 · 김정재 · 박성훈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 국가 생태계 평가에 관한 사항
6.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된다.
-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6조의2(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u></p> <p><u>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u>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u></li> <li><u>2.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li> <li><u>3.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u></li> <li><u>4.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u></li> <li><u>5. 국가 생태계 평가에 관한 사항</u></li> <li><u>6.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u></li> </ol>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